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 1993년 9월 10일 조례 제 323호 개정 1995년 8월 21일 조례 제 397호 일부개정 2015년 11월 16일 조례 제1423호 (제명개정) 일부개정 2017년 12월 26일 조례 제1628호 일부개정 2021년 5월 17일 조례 제1898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직자윤리법」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5. 11. 16〉
- 제2조(구성) ①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,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오산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〈개정 2017. 12. 26, 2021. 5. 17〉
 - 1. 5명의 위원은 판사·검사·변호사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 - 2. 2명의 위원은 오산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과 오산시 (이하 "시"라 한다)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시의원이 된다. [전문개정 2015. 11. 16]
- **제3조(기능)**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 〈개정 2015. 11. 16〉
 - 1. 「공직자윤리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
 - 2.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〈개정 95. 8. 21〉
 - 3.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

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- 4.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
-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. 〈개정 2015. 11. 16〉
- 1.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
- 2.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
- 3.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
- **제4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. 11. 16〉
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〈개정 2015. 11. 16〉
 -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〈개정 2015. 11. 16〉
- **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 〈개정 2015. 11. 16〉
 -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〈개정 2015. 11. 16〉
 - 1.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뢰의 승인〈개정 95. 8. 21〉
 - 2.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
 - 3.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
 - 4.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
 -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 - 1.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
 - 2.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
 - 3.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.

[제목개정 2015. 11. 16]

- 제7조(위원회의 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 - ② 간사는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팀장이 된다. 〈개정 2015. 11. 16〉

[제목개정 2015. 11. 16]

- 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「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,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5. 11. 16]
- 제9조(위원회의 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1995. 8. 21 조례 제397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5. 11. 16 조례 제1423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7. 12. 26 조례 제1628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1. 5. 17 조례 제1898호〉

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